

## 2024년 「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(로컬매장 입점지원)

□ 사업기간 : '24. 1. 1. ~ 12. 31.(12개월)

□ 공모개요

- 사업량 : 수산물 공급자(4개소) 및 로컬매장 사업자(8개소)
- 지원예산 : 4,947백만원(국비30%, 지방비30%, 자부담 40%)

(단위:백만원)

사업명	예산구분	총액 (100%)	국비 (30%)	지방비 (30%)	자부담 (40%)
로컬매장 입점지원	합계	4,947	1,484	1,484	1,979
	경상(자치단체)	920	276	276	368
	자본(자치단체)	4,027	1,208	1,208	1,611

### ① 수산물 공급자

-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‘어업인’
-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‘조합’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‘영어조합 법인’ 및 ‘어업회사법인’

### ② 로컬매장 사업자

-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‘직거래사업자’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‘생산자단체’
- 「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‘조합’
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‘협동조합’ 및 ‘사회적협동조합’

□ 지원내용(붙임1. 참고)

① 수산물 공급자

- (지원조건) 로컬매장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내산 수산물을 공급
- (지원항목) 수산물 공급을 위한 가공·포장·보관시설, 저온배송차량, 방사능 검사장비, HACPP 인증, 판매촉진비 및 홍보비 등
- (지원한도) 사업자당 총733,750천원(국비220,125, 지방비220,125, 자부담 293,500)
- (공급방식) 로컬매장에 수산물 공급 및 품질·재고 관리를 직접 수행  
 ※ 사업장 소재 권역 외 전국 권역으로 수산물 공급 가능 및 직거래 실적 인정

② 로컬매장 사업자

- (지원조건) 수산물 공급자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내산 수산물을 공급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
- (지원항목) 직거래 수산물 판매를 위한 수산코너 인테리어, 냉장·냉동 매대, 저온 보관시설 및 홍보·마케팅비용 등
- (지원한도) 사업자당 총251,500천원(국비75,450, 지방비75,450, 자부담 100,600)
- (운영방식) 냉동쇼케이스 등 판매설비에는 직거래 수산물만 진열 가능  
 ※ 판매설비 외 시설·인테리어 등은 공용사용 가능

□ 로컬매장 입점지원 사업 지원비율

(단위:천원)

지원단가(개소당)	총액 (100%)	국비 (30%)	지방비 (30%)	자부담 (40%)
공 급 자	733,750	220,125	220,125	293,500
직 매 장	251,500	75,450	75,450	100,600

대상	구분	사업내용
공급자	시설예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로컬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가공시설 건축비, 설계비, 감리비, 부대공사(전기·통신·소방·냉난방·옥외간판·CCTV), 선별·가공·포장·냉동·냉장시설, 오수·폐기물 처리시설 등 HACCP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</li> <li>○ 이동형 판매 및 배송차량(5톤 이하) 구입, 수산물 판매를 위한 시설·설비·디자인 등 개조비 일체(해양수산부 지원사업, 어식백세 등 표시)</li> <li>○ 매대, 텐트, 의자, 파라솔, 매대덮개, 그늘막, 보온막, 조명·난방장치, 냉온수기, 시식 비품, 포장·보관설비 등</li> <li>○ 방사능 검사 장비 구입비</li> </ul>
	운영예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판매촉진을 위한 이벤트·행사비 등</li> <li>○ 상품, 품질관리, 홍보마케팅 관련 컨설팅비</li> <li>○ 수산물 납품 물류비용(유류비, 통행료 등)</li> <li>○ 포장재, 박스 등(해양수산부 지원사업, 어식백세 등 표시)</li> <li>○ 상품개발 관련 비용 등</li> </ul>
로컬매장	시설예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산물 판매를 위한 로컬매장 개설·확장·보수 및 인테리어비(가설·철거·바닥·설비공사 등)</li> <li>○ 방사능 검사 장비 구입비</li> <li>○ 냉장·냉동 쇼케이스, 냉동고, 진열대, 배송용 저온차량 등</li> </ul>
	운영예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단지, 배너, 현수막, 리플렛, 홍보물 기획 및 디자인비, 문자·메일 발송비 등</li> <li>○ 쿠킹클래스 강사 섭외비 및 재료비</li> <li>○ 판매촉진을 위한 이벤트·행사비 등</li> </ul>
공통사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비 산출근거는 종합물가정보 등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자료 사용</li> <li>○ 모든 지출증빙은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투명하게 집행하며, 현금집행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</li> <li>○ 부도, 폐·휴업, 사업포기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환수</li> </ul>